

직 제 규 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학회의 직제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조직) ① 학회에는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(2011 01. 31 개정)

② 학회에는 주요 경영방침 사항을 계획하기 위하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③ 학회에는 회원 각자의 전공과 연관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④ 학회에는 필요에 따라 고문단을 둘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⑤ 학회 사무소에는 행정, 회원 및 자산관리, 회계, 편집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둔다.(2011 01. 31 개정)

제4조(기구) 학회의 기구는 <별표 1>과 같다.(2011 01. 31 개정)

제5조(임시조직) 학회는 한시적인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팀조직 등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제 3 장 구 성 원

제6조(임원) 학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로 한다.(2011 01. 31 개정)

제7조(고문) 학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제8조(직원) 학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, 과장, 과원을 둘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제9조(정원) 학회의 정원은 <별표 2>와 같다.(2011 01. 31 개정)

제 4 장 직 무

제10조(회장 및 감사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한다.
②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며 또한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업무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2조(이사) ① 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한다.
② 전임이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학회의 일반사무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13조(사무국) 학회 사무국에는 다음의 유급직원을 둔다.(2011 01. 31 개정)
①사무국장: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사무국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(2011 01. 31 개정)
②과장: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며, 사무국장 유고시 회장의 지명에 의해 그 업무를 대행한다.(2011 01. 31 개정)
③과원: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한다.(2011 01. 31 개정)

제14조(계약 및 재직기간) ①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근무한다.(2011 01. 31 개정)
②정년은 사무국장은 만 62세(해당 회계연도 말까지), 그 이외의 직원은 만 57세(해당 회계연도 말까지)로 한다.(2011 01. 31 개정)

제15조(임금) ①사무국 직원의 임금은 매년 재정위원회에서 편성하는 다음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.(2011 01. 31 개정)
②사무국 직원의 임금은 연봉제로 지급하며 예산에 정해진 비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(2011 01. 31 개정)
③직원퇴직 시 재직 중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퇴직 직원에게 이사회의 의결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(2011 01. 31 개정)

제16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총회, 이사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5. 등기와 공고에 관한 사항
6. 문서의 처리 및 보관·관리와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
7.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8. 교육세미나 및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
9. 학회 홍보에 관한 사항
10. 학회지 및 기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
11. 인사 및 복무관리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12. 기타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

제17조(위원장 및 위원)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를 관장한다.
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5 장 권 한

제18조(권한과 책임) 임원과 직원은 직위에 따른 권한을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
제19조(권한의 위임) ① 회장은 권한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②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직무의 대행) ① 회장 궐위 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2010 04. 15 개정)
 ② 직원이 휴가 또는 일시적인 사유로 업무처리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차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(2010. 04. 15 개정)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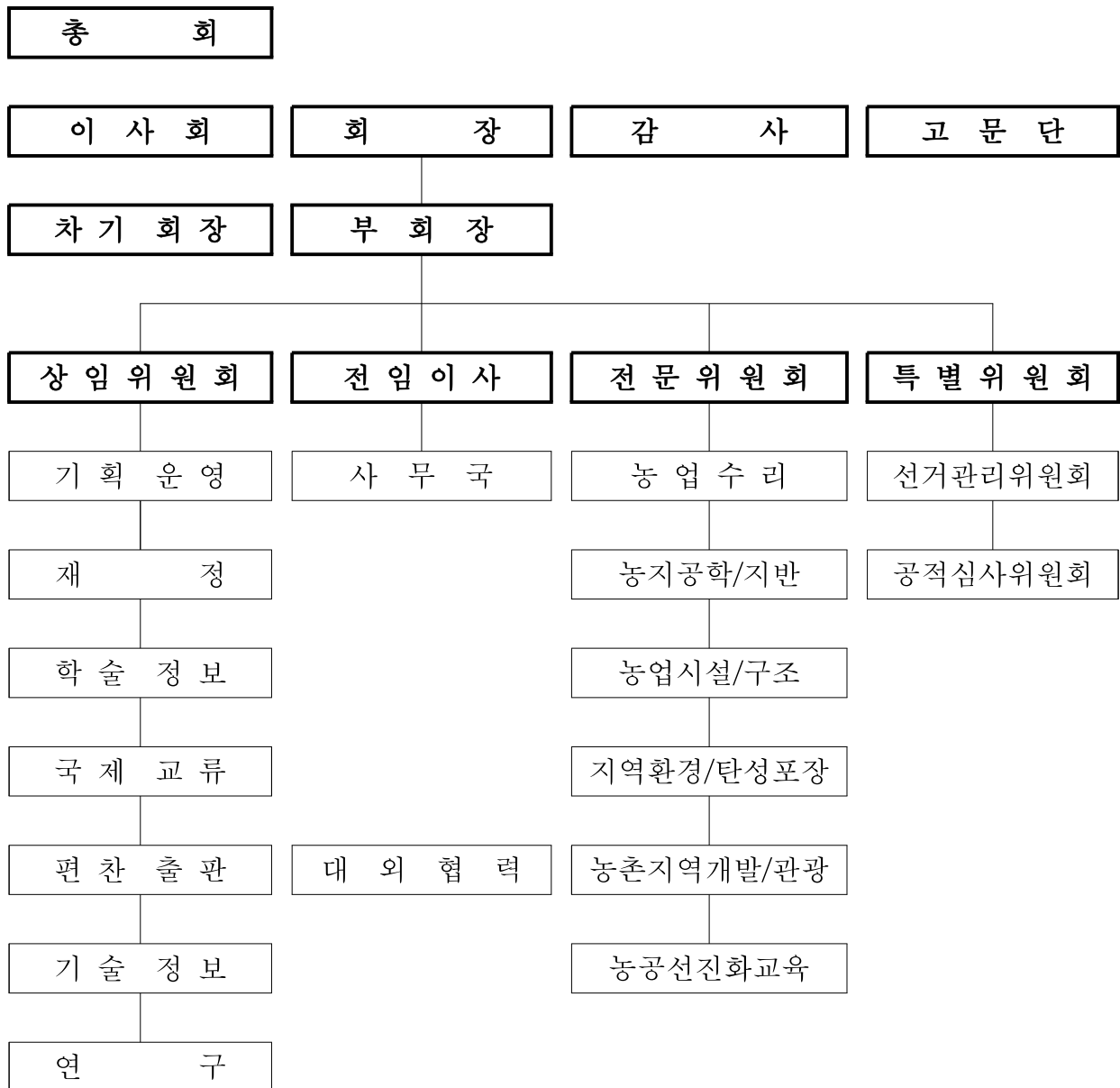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무국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.
3.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 2010년 04월 15일

개정 2011년 01월 31일

〈별 표 1〉

학 회 기 구 표



〈별 표 2〉

정 원 표

구 분	직 위	정 원
임 원	회 장	1명
	부 회 장	12명 이내
	전 임 이 사	1명
	이 사	200명 이내
	감 사	3명
별 정 직	고 문	이사회 의결로 결정
직 원	사 무 국 장	1명
	과 장	1명
	과 원	1명